

불성실 이용자 강좌시설 대상 조치

| 위반유형 | 조치사항 |
|---|---|
| ① 이용자(보호자·가구원 등 포함)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-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,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조치 • 사용자에 대해 해당 월부터 향후 2년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제한 • 1차 적발 : 시설선정취소 최대 3년 가능 • 2차 적발 : 영구 취소 |
| ② 이용자(보호자·가구원 등 포함)의 카드 부정 사용 - 타인에게 카드 양도·대여 등 부당거래 -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 보호자·가구원 또는 타인이 이용권 카드를 결제 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조치 • 사용자에 대해 해당 월부터 향후 2년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제한 • 1차 적발 : 선의 이용자고려 강력경고 • 2차 적발 : 영구 취소 |
|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 사용 -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·양도·대여 등 부당하게 이용 - 타인의 이용권 카드를 결제 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조치 •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해 처리 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,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, 형법 제225조, 제230조, 제231조, 제232조 제236조, 제360조 (공문서 위조, 사문서 위조, 점유이탈물 횡령 등) |
| ④ 대리인의 카드 부당 사용 - 타인(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)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•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해 처리 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,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, 형법 제355조 횡령, 배임 등 |
| ⑤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-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금액 환수 •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해 처리 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,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등 |
| ⑥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% 이상 결석 -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사유 (사고입원 등) 미설명 -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좌시설 : 기초자치단체 통보 - 해당 수강료 환수 • 단,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• 이용자 지원중지 -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|
| ⑦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용자 : 지원중단 가능 -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• 사고, 입원,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|
| ⑧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(공급)하는 경우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안에 따라 처리 -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%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|

【첨부 8】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

-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이해 - 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, 별도 전용강의개설을 통한 차별 등으로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.
 -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'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'의 출석부를 작성, 보관,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출석체크 방법 : [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\(시설회원 MY페이지-출석부관리\)](#)
 - 필요 시, 강좌시설 자체출석부(컴퓨터 파일, 종이 등)로 관리해도 무방
 - 결제실적에 있는 것에 한하여 익월 17일 이후 등록 가능
 - 출석체크 완료 : 익월 말일까지 완료(필요 시, 종이출석부 등 스캔 첨부)
 - 자체 출석부 보관기간 : 최소 2년(연도기준 / 당해 연도 포함)
- 수강생이 사고 - 입원 - 학교일정 등 '정당한 사유 없이' 월 출석일수의 50%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

| 내용 | 조치사항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결제 후 '정당한 사유 없이' 월 출석일수의 50% 이상 결석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(사고·입원 등) 미설명-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강좌시설 : 기초자치단체 통보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해당 수강료 할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- 단, 미통보 누적 2회 시 시설선정 취소 1년● 기초자치단체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(지원중단 의무사항) |

- 스포츠강좌이용권 미결제 강의 진행에 따른 비용은 강좌시설에서 부담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 - 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(공공체육시설의 경우는 전월 결제 가능)
(예 : 1월 강의 결제기간- 1.1 ~ 1.15 / 2월 강의 결제기간- 1.16~2.7)
 -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(지원금 이월 없음)

□ 강좌시설 및 이용권강좌 관련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.

-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 정보의 현행화
 - 이용권강좌 강좌명, 결제금액, 운영요일, 운영시간 등
- 이용권으로 유·청소년 수강이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
 - 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
 - 예) 어머니○○, 직장인○○, ○○○성인반, 대형 스포츠센터의 운영강좌 전체 등록 등
- 이용권 홈페이지 상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
 - 소관 기초자치단체 또는 이용권 상담센터(☎ 02-410-1298~9)에 변경요청 (시설명, 주소 등)

□ 이용권 강좌시설·신청 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, 기초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부서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사업자등록번호, 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변경
- 시설명 및 각종 연락처(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) 변경
-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

□ 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·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용권 사업 운영현황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현장방문 또는 이용현황 조사 시,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(요청자료 제공 등).

□ 「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·불성실 사용 처리기준」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- 이용권에 대한 타인 사용 정황 인지 시 '부정방지신고센터' 또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등

□ 본 준수사항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. 본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로서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소관 자치단체가 부득이하게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